

의안 번호	973	【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3. 04. 03.(수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4. 0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4. 12.(금)

2. 개정이유

-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”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30% 감면(안 제8조 제2호 나목)
- 나.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위탁을 위해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」에 위임 근거 마련(안 제16조 제1항)

4. 관련법령

-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5. 검토의견

- 개정조례(안) 제8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을 추가함으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고,
- 2012. 11. 5.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위탁대상에 도시관리공단과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